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업수입안정보험 및

농업재해공제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37호)
- 임호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58호)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78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7
1. 제명 변경 및 재해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 추가 (서삼석의원안)	7
2. 비보험작물을 대상으로 ‘농업재해공제’제도 신설 (임호선의원안)	35
3. 보상의 범위에 기상특보구역 포함(김용태의원안)	55
4. 기후변화 대응 재해보험 보상범위 연구 기능 추가 (김용태의원안)	60
5.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 업무 추가(서삼석의원안)	63

I. 제안경위

1. 서삼석의원안(제2218037호)

가. 발 의 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6. 4. 2.

다. 회 부 일 : 2026. 4. 3.

2. 임호선의의원안(제2218158호)

가. 발 의 자 : 임호선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4. 7.

다. 회 부 일 : 2026. 4. 8.

3. 김용태의원안(제2218378호)

가.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4. 16.

다. 회 부 일 : 2026. 4.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서삼석의원안(제2218037호)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법 제정 이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

후 현재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심화로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감소 위험도 확대되고 있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 등 경영 위험에 따른 수입(收入)감소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지원 방식 및 정책보험 운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가.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또는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收入)감소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정책보험의 유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명칭을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변경하고, 정책보험 운영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3조).
- 라. 정책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목적물을 농작물 및 임산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등).
- 마.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정책보험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감독, 정책보험 관련 가격 공시 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25조의2 등).

2. 임호선의원안(제2218158호)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 운영 품목과 미운영 품목 간 재해 대응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보험 미운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실질적인 재해보장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하고, 재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가. 제도명을 “농업재해공제”으로 하고, 목적·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 공통 적용 조항에 본 제도를 추가함(안 제1조 등)

나. 제도 운영을 위한 농업재해공제, 공제가입금액, 공제부담금, 공제금을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다. 재해공제의 종류를 농작물재해공제, 임산물재해공제로 정하고(안 제20조), 공제목적물을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로 정함(안 제21조).

라.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정하고(안 제24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모집, 손해평가 등 일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마. 공제부담금은 재해공제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안 제25조).

바. 공제금 지급에 대한 분장을 조정하는 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

사. 공제가입자 등의 의무(안 제32조)와 공제가입자 등을 보호하도록 운영기관의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 33조).

아.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부담금 등을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고(안 제34조), 제도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부족금과 관련하여 재보험기금을 사용하도록 정함(안 제37조, 안 제38조).

3. 김용태의원안(제2218378호)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있으며, 단순 수확량 감소를 넘어 과실의 착색 불량, 기형과 발생, 등급 하락 등 품질 저하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또한, 농어업인이 기상감정 등을 통해 기상현상이 농작물의 직접적 피해 요인임을 입증한다 해도, 손해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약관상 농어업재해와 재해 보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상액이 삭감되고 특정 품목·구간만 보상되는 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려는 재해보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불확실한 기후위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절대적 약자인 농어업인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

조임.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년 대비 일정량 이상의 일조량 감소라는 기상 관측 데이터에 의해 농어업재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에 기상청의 기상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재해와 농어업 목적물의 피해(품질 저하 포함)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하도록 명시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농어업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 및 제25조의2 개정).

Ⅲ. 검토의견

1. 제명 변경 및 재해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 추가 (서삼석의원안)

서삼석의원안(이하 개정안)은 현행 제명인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따른 보험의 종류에 농업·어업재해보험 외에 농작물과 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는 것임.

현 행	서삼석의원안
<u>농어업재해보험법</u>	<u>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u>농어업재해보험</u>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손해와 농작물과 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收入)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u>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 <u>농어업재해보험</u> ”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u>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

현 행	서삼석의원안
다.	한다.
	가.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나. 어업재해보험: 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또는 농작물과 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5.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손해 -----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 -----.
6. “시범사업”이란 <u>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u> 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6.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사업(이하 “정책보험사업”이라 한다) ----- ----- -----.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현 행	서삼석의원안
· 변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u>농어업재해보험</u> (이하 “<u>재해보험</u>”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u>농업재해보험심의회</u>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u>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u>(이하 “<u>기본계획</u>”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재해보험사업</u>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u>재해보험</u>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3. <u>재해보험</u>의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u>재해보험사업</u>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u>재해보험</u>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u>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u>(이하 “<u>시행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변경) ① ----- -----<u>농어업재해</u> 및 <u>경영위험관리</u>에 관한 <u>정책보험</u>(이하 “<u>정책보험</u>”이라 한다)-----<u>농업정책보험심의회</u>----- ----- ----- -----<u>정책보험 발전 기본계획</u>----- ----- ----- ----- ----- ----- ② ----- ----- ----- 1. <u>정책보험사업</u>----- ----- 2. <u>정책보험</u>----- ----- 3. <u>정책보험</u>----- ----- 4. <u>정책보험사업</u>----- ----- 5. -----<u>정책보험</u>----- ----- ----- ----- ----- ③ ----- -----<u>정책보험</u>----- ----- ----- ----- -----

현행	서삼석의원안
④ ~ ⑦ (생략)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3(실태조사)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4(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생략) 4.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5. (생략) 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장 또는 「수산업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조의3(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조의4(정책보험 등의 심의) <u>정책보험 및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재보험-----농업정책보험심의회-----</u> ----- ----- ----- ----- 1. <u>정책보험-----</u> ----- 2. <u>정책보험사업-----</u> ----- 3. (현행과 같음) 4. <u>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 관리에 관한 재보험사업-----</u> ----- 5. (현행과 같음) 6. -----<u>농업정책보험심의회-----</u>

현행	서삼석의원안
· 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장이 <u>재해보험</u> 및 재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u>농업재해보험심의회</u>(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u>재해보험</u> 목적물의 선정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 4. (생략) ②·③ (생략)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u>재해보험</u>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의 <u>재해보험</u>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 -----<u>정책보험</u>----- ----- - 제3조(농업정책보험심의회) ① 농업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및----- ----- -----<u>농업정책보험심의회</u>----- -----. 1. (현행과 같음) 2. <u>정책보험</u>----- ----- 3.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 -----<u>정책보험</u>----- ----- ----- 2. -----<u>정책보험</u>----- ----- -----

현행	서삼석의원안
3.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u>산림청</u> 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 ----- ----- ----- <u>농촌진흥청·산림청</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후단 신설>	⑥ ----- ----- ----- ----- ----- <u>. 이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또는 정책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u>3의2. 농업수입안정보험분과위원회</u>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2장 <u>재해보험사업</u>	제2장 <u>정책보험사업</u>
제4조(<u>재해보험의 종류 등</u>) <u>재해보험</u> 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u>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u> 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u>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u> 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제4조(<u>정책보험의 종류 등</u>) <u>정책보험</u> ----- ----- ----- <u>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및</u> ----- ----- <u>임산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및</u> ----- ----- ----- -----.
제5조(보험목적물) ① 보험목적물은 다	제5조(보험목적물) ① -----

현 행	서삼석의원안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u>농업재해보험심의회</u>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1. 1의2. (생 략) <u><신 설></u> 2. 3. (생 략) ② (생 략)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u>재해보험</u>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u>재해보험</u>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u>재해보험</u>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가입자) <u>재해보험</u>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험사업자) ① <u>재해보험사업</u>을	----- ----- ----- -----<u>농업정책보험심의회</u>-----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u>1의3.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작물 및 임산물</u>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u>정책보험</u>----- ----- ----- ----- -----<u>정책보험</u>----- -----. ② -----<u>정책보험</u>----- ----- -----. 제7조(보험가입자) <u>정책보험</u>----- ----- ----- ----- -----. 제8조(보험사업자) ① <u>정책보험사업</u>-----

현행	서삼석의원안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u>재해보험사업</u>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u>재해보험사업</u>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u>재해보험사업</u>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u>재해보험사업</u>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u>재해보험사업자</u>”라 한다)는 <u>재해보험</u>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u>재해보험사업자</u>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 ③ <u>재해보험사업자</u>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정책보험사업</u>----- ----- -----<u>정책보험사업</u>-----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정책보험사업</u>----- ----- -----.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 ----- -----<u>정책보험사업</u>----- -----<u>정책보험사업자</u>-----<u>정책보험</u>-----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u>정책보험사업자</u>----- ----- ----- ----- -----. ③ <u>정책보험사업자</u>----- -----

현행	서삼석의원안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모집) ① <u>재해보험</u>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u>재해보험</u>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u>재해보험</u>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u>재해보험사업자</u>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생략) ② <u>재해보험사업자</u>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 ----- -----. 제10조(보험모집) ① <u>정책보험</u>-----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정책보험</u>----- -----<u>정</u> <u>책보험</u>----- ----- -----. -----<u>정책보험사업자</u>----- ----- ----- ----- ----- ----- ----- ----- ----- -----.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책보험사업자</u>----- ----- -----.

현행	서삼석의원안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u>재해보험사업</u> 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u>정책보험사업</u> 자-----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재해보험사업자</u> 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 교차손해평가(손해평가인 상호간에 담당지역을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손해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u>정책보험사업자</u> -----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u>재해보험</u>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 ----- ----- ----- ----- <u>정책보험</u> ----- ----- -----.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현행	서삼석의원안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u>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u> 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 ----- <u>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및</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u>재해보험사업자</u> 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u>정책보험사업자</u> ----- -----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u>재해보험사업자</u> 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u>재해보험사업자</u>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u>재해보험사업자</u> 는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 ----- <u>정책보험사업자</u> ----- ----- <u>정책보험사업자</u> ----- ----- -----. ----- ----- ----- ----- ----- <u>정책보험</u>

현행	서삼석의원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 <u>재해보험</u>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u>재해보험가입자</u>가 <u>재해보험</u>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u>재해보험계약</u>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4조(업무 위탁) <u>재해보험사업자</u>는 <u>재해보험사업</u>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u>손해평가</u> 등 <u>재해보험</u>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회계 구분) <u>재해보험사업자</u>는 <u>재해보험사업</u>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조정) <u>재해보험</u>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u>사업자</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 <u>정책보험</u>-----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u>정책보험가입자</u>가 <u>정책보험</u>----- -----<u>정책보험계약</u>----- -----. 제14조(업무 위탁) <u>정책보험사업자</u>는 <u>정책보험사업</u>----- -----<u>손해평가</u> 등 <u>정책보험</u>----- -----. 제15조(회계 구분) <u>정책보험사업자</u>는 <u>정책보험사업</u>----- -----. 제17조(분쟁조정) <u>정책보험</u>----- -----. 제18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

현 행	서삼석의원안
법에 따른 <u>재해보험사업</u>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u>재해보험사업</u>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u>재해보험가입자</u>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u>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u>(이하 “<u>운영비</u>”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u>재해보험가입자</u>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u>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 <후단 신설> ③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u>정책보험사업</u>----- ----- ----- ----- ----- ----- ----- ----- ② -----<u>정책보험사업</u>----- ----- ----- ----- ----- 제19조(재정지원) ① ----- -----<u>정책보험가입자</u>----- -----<u>정책보험사업자의 정책보험</u>----- -----<u>부가보험료</u>----- ----- ----- -----<u>정책보험가입자</u>----- ----- ② ----- ----- -----<u>정책보험사업자</u>-----<u>이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u> ③ ----- -----

현 행	서삼석의원안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u>재해보험</u>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u>운영비</u>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보험사업 및 <u>농어업재해보험기금</u> 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u>재해보험</u>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u>재해보험사업자</u>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u>재해보험사업자</u>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3. (생략) ③ (생략) 제21조(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u>농어업재해보험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u>농어업재해보험사업</u>의 관리)	----- -----<u>정책보험</u>----- ----- -----. ④ -----<u>부가보험</u> <u>료</u>----- -----. 제3장 재보험사업 및 <u>농어업정책보험기금</u> 제20조(재보험사업) ① -----<u>정책보</u> <u>험</u>-----. ② ----- ----- <u>정책보험사업자</u>----- -----. 1. <u>정책보험사업자</u>----- -----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기금의 설치) ----- ----- ----- -----<u>농어업정책재보</u> <u>험기금</u>----- -----. 제25조의2(<u>정책보험사업</u>의 관리) ① --

현 행	서삼석의원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재해보험사업</u>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재해보험사업</u>의 관리·감독 2. <u>재해보험</u> 상품의 연구 및 보급 3. (생 략)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u>재해보험</u>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 5.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8조제2항에 따른 <u>재해보험사업</u>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신 설> 3. (생 략)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u>재해보험사업</u>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 (생 략) 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②	----- -----<u>정책보험사업</u>----- ----- -----. 1. <u>정책보험사업</u>----- 2. <u>정책보험</u>----- 3. (현행과 같음) 4. -----<u>정책보험</u>----- 5.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u>정책보험사업</u>----- 2의2. 제11조제7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4조에 따라 정책보험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감독 3의3. 제25조의3에 따른 가격의 공시에 관한 업무 4. -----<u>정책보험사업</u>----- -----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②

현행	서삼석의원안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재해보험의</u> 건전한 운영과 <u>재해보험가입자의</u>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재해보험사업자에게</u> <u>재해보험사업에</u>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등) ----- ----- <u>정책보험</u> <u>의</u> ----- <u>정책보험가입자</u> ----- ----- ----- <u>정책보험사업자에게</u> <u>정책보험사업</u> ----- ----- -----.
제32조(과태료) ① <u>재해보험사업자가</u>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2조(과태료) ① <u>정책보험사업자</u> ----- ----- ----- ----- -----.
② <u>재해보험사업자의</u>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u>정책보험사업자</u>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u>재해보험사업자가</u> 아닌 자	1. ----- ----- ----- <u>정책보험사업자</u>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현 행	서삼석의원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개요 등

현행법¹⁾은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① 농작물, ② 임산물, ③ 양식수산물, ④ 가축과 ⑤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4조에서 재해보험의 종류를 ① 농작물재해보험, ② 임산물재해보험, ③ 양식수산물재해보험, ④ 가축재해보험으로 열거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근거도 규정되어 있음.

농식품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농가가 부담하는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농업재해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① 농작물(임산물 포함)재해보험, ② 가축재해보험, ③ 가축질병치료보험, ④ 수입안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각의 보

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험에는 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음.

[농어업재해보험 사업 개요]

연번	구분	예산 (백만원)	내용
1	농작물 재해보험	535,584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임산물 포함)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2	가축 재해보험	112,220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영업보험료의 50% 지원
3	가축질병 치료보험	1,200	가축질병 치료비 및 예찰활동 비용의 일부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영업보험료의 50% 지원
4	농업수입 안정보험	275,181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收入) 감소위험을 관리하는 보험으로 순보험료 50% 지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재구성

이중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 외에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분’도 보장해주는 사업임.

우리나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개별 품목별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미국식 수입보험(Revenue Protection)과 유사하고, 농가 전체 단위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일본식 농업경영수입보험과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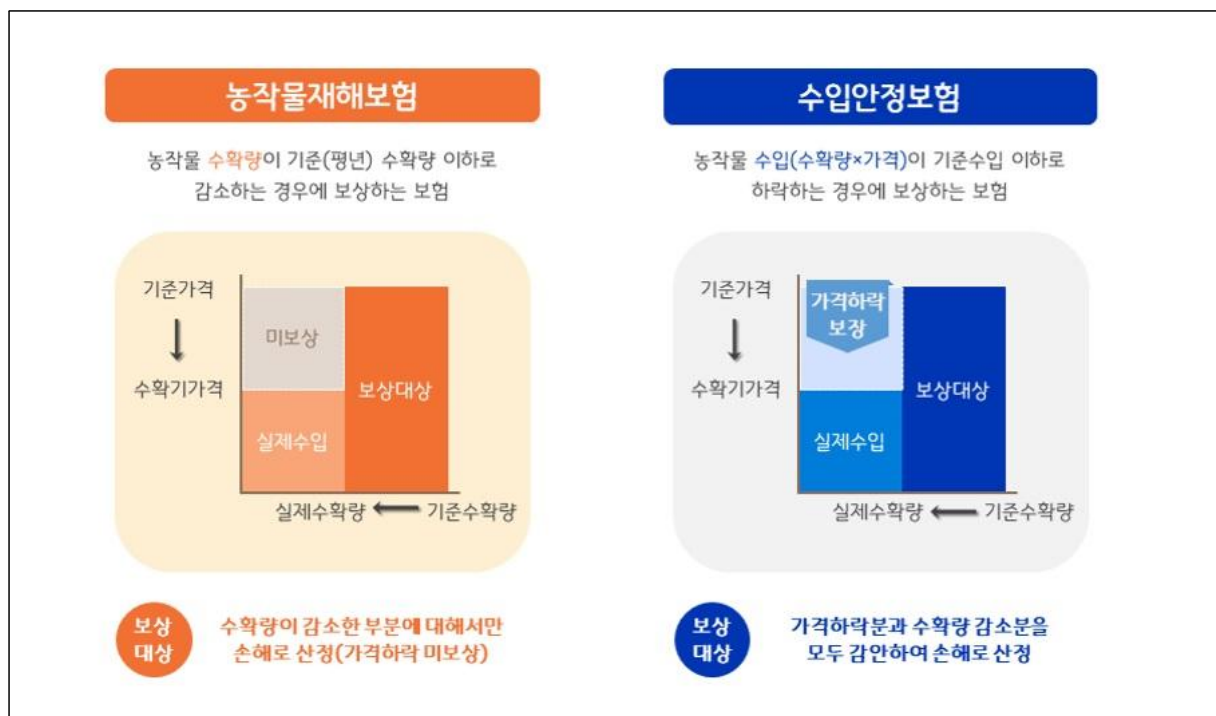
[해외 수입안정보험 비교]

구분	우리나라 농업수입안정보험	미국 수입보험	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
명칭	농업수입안정보험	Revenue Protection	農業經營收入保險
근거법률	농업정책보험법	Farm Bill	農業保險法
도입시기	2015년	2011년 * 수입 보장형 보험 상품은 1996년 최초 도입, 현행 RP 상품은 2011년 도입	2019년
배경·목적	▸ 자연재해 및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감소를 보상	▸ 새로운 가격위험완화 장치 필요 ▸ 식량안보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뒷받침	▸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업인에 대한 경영위험 완화 지원
가입 단위	▸ 농지(개별 품목)	▸ 농지 또는 농가 (개별 품목)	▸ 농가(전 품목)
대상 품목	▸ 20개(콩, 고구마, 감자, 포도, 마늘, 양파, 양배추, 보리, 옥수수, 무, 배추, 복숭아, 단감, 감귤(만감류), 벼, 사과, 배, 대파, 시설대파, 시설수박)	▸ 15개(옥수수, 대두, 밀, 수수, 보리, 목화, 땅콩, 해바라기, 쌀, 건완두콩, 카놀라, 건콩, 팥콘 등)	▸ 농가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비육우, 비육돈, 계란 제외)
보상 대상	▸ 자연재해에 따른 개별 품목 수량 감소 및 가격변동(각각 보상)	▸ 수량 감소,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개별 품목 수입 손실	▸ 수량 감소,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 전체 수입 손실
보험금 계산	▸ 보험금 = 기준수입 × 보장수준 - 당년수확량 × min(기준가격, 수확기가격)	▸ 보험금 = 기준수입 × 보장수준 - 당년수확량 × 수확기가격	▸ 보상금 = (기준수입 × 보상한도 - 보험연도 농가 수입) × 지불율
기준수입 (보험가입 금액)	▸ 평년수확량*×기준가격 ** * 최근 5년 평균수확량 ** 최근 5년 수확기가격 올림픽 평균	▸ 가입수확량 × min {기준가격×2, max (기준가격, 수확기가격)} * 기준가격 = 선물가격	▸ 과거 연속 5개년 평균수입
보장수준 (보조율)	▸ 60~85%(50%)	▸ 50~85%(67~38%)	▸ 보험방식 50~80%(50%) + 적립방식 0~10%(75%)
보험가입 전제조건	▸ 경영체 등록	-	▸ 과거 수입 입증하는 세금신고(청색신고) 1년 이상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제출자료(2026.5.)

또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피해와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품목별 수입 감소를 모두 보상한다는 점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피해만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차이가 있음.

[농업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비교(그림)]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제출자료(2026.5.)

현재 수확량 감소는 당해연도 수량이 평년 수량 대비 일정 수준 이하(60~90%)로 감소하면 감소분 전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수입 감소와 관련하여서는 기준수입(과거 5년간의 수확량과 시장가격으로 산출)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60~85%) 이하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전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비교]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	78개	시범사업 6개, 본사업 14개
보상기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수량 감소: 당해연도 수량이 평년수량의 60~9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체 보상	좌동
	-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 품목별 수입이 평년수입의 60~8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체 보상
보장수준	60%, 70%, 80%, 85%, 90%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	60%, 70%, 80%, 85%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
정부지원	순보험료의 50% * 지자체에서 평균 30~40% 지원, 농가는 10~20% 부담 중	순보험료의 50% * 지자체에서 평균 30~40% 지원, 농가는 10~20% 부담 중
가입률	54.0%	19.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제출자료(2026.5.)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3개 품목,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6년에는 14개 품목에 대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본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 중임.

[2026년 농업수입안정보험 품목]

구분	품목
본사업	콩, 고구마, 감자(봄·고랭지·가을), 옥수수, 보리, 마늘, 양파, 포도, 양배추(가을·월동), 배추(가을), 무(가을), 감귤(만감류), 복숭아, 단감
시범사업	벼, 사과, 배, 시설대파, 대파, 시설수박, 무(봄·고랭지·월동), 배추(봄·고랭지·월동)

동 사업은 수입안정보험 가입 농가에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30~4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가입률은 19.0%임.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조사한 농가의 품목별 ‘수확량’에 대표성·객관성 등을 갖춘 ‘기준가격’을 곱해 기준수입과 당해수입을 산정²⁾하고, 기준수입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따라 3개의 상품(① 과거수입형, ② 기대수입형, ③ 실수입형)³⁾을 운영하고 있음.

이때 기준가격은 ① 과거수입형과 ② 기대수입형은 지수가격(도매시장가격 등)을, ③ 실수입형은 실제 농가수취가격(계약재배가격 등)을 활용하게 됨.

농가는 가입 시 보장 수준(60~85%)을 선택할 수 있으며, 85% 보장 상품은 수급정책참여, 전 필지 가입 등 정책 기여도를 고려하여 운영됨.

2) ▶ 기준수입 = 과거 5년 평균 수확량 × 기준가격(과거 5년 올림픽평균 수확기가격)

▶ 당해수입 = 당해연도 수확량 × 당해연도 수확기가격

3) ① 과거수입형: 기준가격을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으로 적용

② 기대수입형: 수확기가격 상승시 기준가격에 반영

③ 실수입형: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수입안정보험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 외에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분’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보상의 범위가 이 법에 규정된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보다 확대 적용되고 있음.

농식품부는 현행법 제27조4)의 시범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업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 중임.

다만, 시범사업 역시 농업재해보험의 범위에 속하는 보험상품에 한정⁵⁾된다는 점에서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시범사업 근거 규정으로 보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연장평가, 국회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에서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음.

-
- 4)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제2조(정의) 1~5. (생략)
6.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수입안정보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지적]

구분	내용
2025년 예산안 심사 부대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기재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 (2021) 일부 내역사업의 법률적 근거 부족, 사업 실적 부진, 부정 지급 관리의 미흡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2024) 수입안정보험 법적 근거 마련, 보험계약의 정확성 관리 등 필요
2025년도 예산안 검토(분석)보고서	○ (예결위)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예산처) 수입안정보험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상임위) 정부가 수입안정보험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개정안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고, 제명을 변경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 함으로써 이 법상의 보험이 재해뿐 아니라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농업 수입안정까지 보험으로 포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보험'으로 변경한 것은 '재해'에는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손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반면,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은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되 실제 운영은 민간보험사를 활용하는 보험으로 수입안정보험을 포괄할 수 있음.

농업수입안정보험이 2025년부터 시범사업이 아니라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동 보험의 법적 근거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일견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박덕흠 의원안(의안번호 2205053호)과 정희용의원안(의안번호 2209500호)이 기 발의되어 있으며, 2025년 12월 우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차원에서 기 발의된 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박덕흠의원안	정희용의원안
○ 제명을 '농어업재해보험'에서 '농어업정책 보험'으로 변경 ○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	○ 제명을 '농어업재해보험'에서 '농어업정책 보험'으로 변경 ○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 ○ 농업정책보험심의회에 농진청 고위공무원 포함 등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① 우리 위원회 2025년 예산안 예비 심사(2024. 11. 14.) 단계에서 농가소득 파악 등 기반구축 미흡,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법적 근거 미비 등 본사업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을 1,119억원 감액하고 해당 감액분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의결하였고, ② 수입안정보험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③ 제명 변경에 대하여 기존의 '재해보험'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계속 심사하도록 한 바 있음.

그리고,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 또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상 대상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포함하나, ‘시장가격’과 ‘수입’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시장가격 변동과 수입 감소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구별되는 수입안정보험만의 핵심 요소임.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가격이 도매시장 가격인지, 산지출하가격인지, 소매가격인지 불분명하고 수입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상품의 수입 산출 방식이 3가지(① 과거수입형, ② 기대수입형, ③ 실수입형)이고 수입 산출 시 적용하는 시장가격 역시 품목별로, 품목 내에서도 품종이나 용도별로 상이⁶⁾하므로, 시장가격과 수입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 제3조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명칭을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변경하면서 농업수입안정보험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있는데, 보험목적물이 농작물·임산물로 동일한 수입안정보험에 관한 사항도 심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

6) 고구마는 밤과 호박고구마로 나뉘서 가락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쓰고, 콩의 경우 백태는 양곡도매시장 가격을, 나물용은 지역농협 구매가격을 쓰고 있으며, 마늘의 경우 도매시장에서는 깎 마늘만 유통되고 있어서 지역농협 구매가격을 사용함.

만으로도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입안정보험과 재해보험은 가격 변동성에 대한 보상 여부 등 보장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보험목적물이 동일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안정을 지원한다는 정책목적 또한 유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재해의 보장범위, 보험 운영방식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정책 간 정합성 및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2. 비보험작물을 대상으로 ‘농업재해공제’제도 신설(임호선 의원안)

임호선의원안(이하 개정안)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로서 ‘농업재해공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임호선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u>농어업재해보험</u>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농어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공제</u>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u>농업재해공제(共濟)</u> ”란 <u>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공제 방식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u> 7. “ <u>공제가입금액</u> ”이란 <u>농업재해공제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공제가입자와 운영기관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u>
<u><신설></u>	

현 행	임호선의원안
<신 설> <신 설> 6.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8. “공제부담금”이란 공제가입자와 운영기관 간에 약정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운영기관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공제금”이란 공제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가입자와 운영기관 간의 약정에 따라 운영기관이 공제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 한다) 및 농업재해공제사업(이하 “재해공제사업”이라 한다)----- ----- ----- -----.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① ----- ----- -----한다) 및 농업재해공제(이하 “재해공제”라 한다)----- ----- ----- ----- -----.

현 행	임호선의원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재해보험사업</u>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u>재해보험</u>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3. <u>재해보험</u>의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u>재해보험사업</u>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u>재해보험</u>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u>재해보험</u> 발전 시행계획(이하 “<u>시행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2조의4(<u>재해보험</u> 등의 심의) <u>재해보험</u> 및 <u>농어업재해재보험</u>(이하 “<u>재보험</u>”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u>재해보험</u>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u>재해보험사업</u>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② ----- -----. 1. <u>재해보험사업</u> 및 <u>재해공제</u>----- 2. <u>재해보험</u> 및 <u>재해공제</u>----- ----- 3. <u>재해보험</u> 및 <u>재해공제</u>----- ----- 4. <u>재해보험사업</u> 및 <u>재해공제사업</u>--- 5. ----- <u>재해보험</u> 및 <u>재해공제</u> --- ----- ----- ----- ③ ----- <u>재해보험</u> 및 <u>재해공제</u>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조의4(<u>재해보험</u> 등의 심의) <u>재해보험</u>, <u>재해공제</u> 및 ----- ----- ----- ----- -----. 1. <u>재해보험</u> 및 <u>재해공제</u>----- ----- 2. <u>재해보험사업</u> 및 <u>재해공제사업</u>---

현행	임호선의원안
3. ~ 5. (생략) 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u>재해보험 및 재보험</u>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u>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u>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u>재해보험</u> 목적물의 선정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 4. (생략) ② ③ (생략)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u>재해보험</u>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의 <u>재해보험</u>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3. ~ 5. (현행과 같음) 6. ----- ----- ----- ----- ----- <u>재해보험, 재해공제</u> 및 -----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u>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공제</u> 및 ----- ----- ----- ----- -----. 1. (현행과 같음) 2. <u>재해보험 및 재해공제</u> ----- ----- 3. 4.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u>재해보험 및 재해공제</u>----- ----- 2. ----- <u>재해보험 또는 재해공제</u> -----

현행	임호선의원안
단에 속하는 공무원 3.·4. (생략) ⑤·⑥ (생략)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u>농업재해보험에</u>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 3.·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 - <u>농업재해보험 및 재해공제</u>----- ----- ----- -. ⑧ (현행과 같음) <u>제3장 재해공제사업</u> <u>제20조(재해공제의 종류 등) ① 농업재해공제의 종류는 농작물재해공제, 임산물재해공제로 한다.</u> <u>② 농업재해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산물재해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u>제21조(공제목적물) ① 공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공제의 효용성 및 공제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다.</u> <u>1. 농작물재해공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u> <u>2. 임산물재해공제: 임산물 및 임업용</u>

현 행	임호선의원안
<신 설>	<u>시설물</u> ② 정부는 공제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의 범위 등) 재해공제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공제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공제가입자) ① 재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업, 임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공제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해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공제운영기관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재해공제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공제운영기관) 재해공제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 설>	제25조(공제부담금) 재해공제의 공제부담금은 재해공제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제운영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현행	임호선의원안
<u><신설></u>	제26조(손해평가 등) 재해공제의 손해평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8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제운영기관”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공제”로, “보험가액”은 “공제가액”, “보험가입자”는 “공제가입자”로 한다.
<u><신설></u>	제27조(공제금수급계좌 등) 공제금수급계좌, 수급권의 보호, 공제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1조의7, 제12조, 제1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제운영기관”으로, “보험금”은 “공제금”으로, “재해보험”은 “재해공제”로, “보험목적물”은 “공제목적물”로, “재해보험가입자”는 “재해공제가입자”로, “재해보험계약”은 “재해공제계약”으로 한다.
<u><신설></u>	제28조(업무위탁) 공제운영기관은 재해공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집, 피해 접수, 공제금 지급, 손해평가 등 재해공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u><신설></u>	제29조(회계 구분) 공제운영기관은 재해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현 행	임호선의원안
<신 설>	제30조(분쟁조정) 공제운영기관은 재해 공제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調停)을 위해 공제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공제계약자 등의 의무) ① 공제 가입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제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 용에 관하여 공제운영기관을 기망하 여 공제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알선· 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제운영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지급된 공제금에 대하여 그 지 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환수 절차 및 가산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제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확정 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공제가입을 제 한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공제계약자 등의 보호) ① 공제 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 없이 사고 조사를 이유로 공제금 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 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제운영기관은 공제계약의 체결

현행	임호선의원안
<신설>	<u>시부터 공제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가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u>③ 공제운영기관은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u> <u>제33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운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정부는 공제운영기관이 공제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공제금이 총 공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33조의 재보험기금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u>

현 행	임호선의원안
<u>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u> <u>제20조 · 제21조</u> (생 략) <u>제22조</u>(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u>제23조</u>(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u>제24조 · 제25조</u> (생 략) <u>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u> <u>제25조의2</u>(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3. (생 략)	<u>부가 보전한다.</u> <u>제4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u> <u>제34조 · 제35조</u>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u>제36조</u>(기금의 조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u>7. 재해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u> ② (현행과 같음) <u>제37조</u>(기금의 용도) ----- -----. 1. ~ 3. (현행과 같음) <u>4. 재해공제사업에서 공제부담금 총액을 초과하는 공제금의 지급</u> 5. (현행 제4호와 같음) <u>제38조 · 제39조</u> (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 <u>제5장 보험 및 공제 사업의 관리</u> <u>제40조</u>(사업의 관리)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u>3. 재해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u> 4.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	임호선의원안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u>재해보험</u>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 5.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u>제5호</u>까지의 업무 2. 3. (생략) 4. 그 밖에 <u>재해보험사업</u>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 (생략) <u>제26조</u>(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보험상품</u>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재해별 통계 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u>보험대상의 현황</u> 2. <u>보험확대</u>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 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3. ~ 5. (생략) 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재해보험사업</u>의 건전한	5. ----- <u>재</u> <u>해보험·재해공제</u> -----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 -----. 1. ----- <u>제6호</u>----- 2. 3. (현행과 같음) 4. ----- <u>재해보험사업 및 재해공제</u> <u>사업</u>----- ----- ③ (현행과 같음) <u>제41조</u>(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 ----- - <u>보험상품 및 공제</u>----- ----- ----- ----- -----. 1. <u>보험 및 공제 대상의 현황</u> 2. <u>보험 및 공제 확대</u> ----- -----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재해보험사업 및 공제사업</u>-----

현행	임호선의원안
운영을 위하여 <u>재해보험 제도</u> 및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생략) <u>제27조(시범사업)</u> ①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u>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u>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u>재해보험</u>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하여야 하고, <u>보험가입</u>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u>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u> ① (생략) <u><신설></u> ② <u>보험가입촉진계획</u>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29조·제29조의2</u> (생략) <u>제5장 별칙</u>	----- <u>재해보험·재해공제 제도</u> ----- ----- -----. ④ (현행과 같음) <u>제42조(시범사업)</u> ① (현행과 같음) ② <u>재해공제운영기관</u>은 신규 공제상품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u>제43조(가입의 촉진 등)</u> ----- ----- <u>재해보험 및 재해공제</u>----- ----- <u>보험 및 공제 가입자</u>----- -----. <u>제44조(가입촉진계획의 수립)</u> ① (현행과 같음) ② <u>재해공제운영기관</u>은 <u>농업재해공제 가입 촉진</u>을 위하여 <u>공제가입촉진계획</u>을 매년 수립하여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u>보험 및 공제 가입촉진계획</u>----- -----. <u>제45조·제46조</u> (현행 제29조 및 제29조의2와 같음) <u><삭제></u>

현 행	임호선의원안
<u>제5장 벌칙</u> <u>제30조(벌칙) ① (생 략)</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③ <u>제15조</u>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31조</u> · <u>제32조</u> (생 략)	<u>제6장 벌칙</u> <u>제4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u>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u> ③ <u>제15조, 제31조</u>----- -----. <u>제48조</u> · <u>제49조</u> (현행 제31조 및 제32조와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 발생 시 농가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전하는 대표적인 정책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품목별 위험 분석, 손해평가 기준 마련, 보험요율 산정 가능성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나 모든 농작물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음.

이에 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자연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 등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조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원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피해액을 충분히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보험 운영 품목과 미운영 품목 간 재해보장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 간에도 품목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농업재해대책 및 농업재해보험 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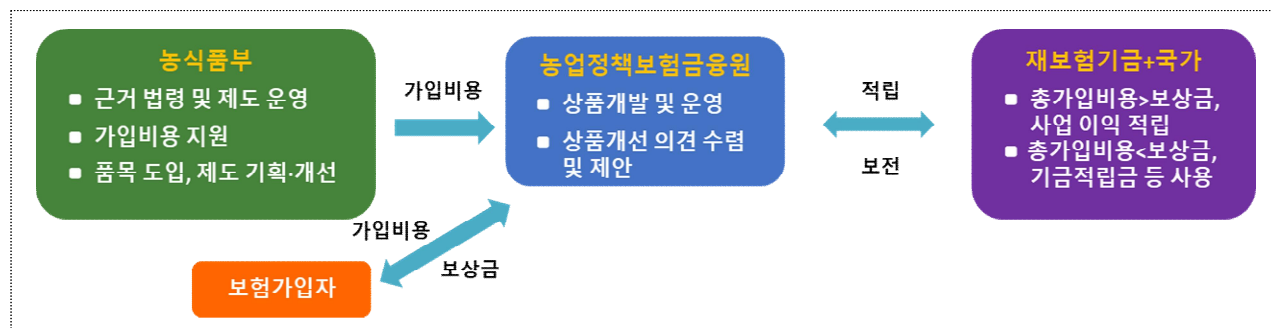
구분	농업재해대책	농업재해보험
목적	· 피해농장·시설의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 ⇒ 농작물 피해확산 방지, 생산 재개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	·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험금으로 보상 ⇒ 농가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자기 책임하에 사전적으로 위험 대비
보조율	· 대파대·가축입식비 50%, 농약대 100% 등 * 단가는 실거래가의 약 50~100% 수준('24: 62.4%)	·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 (농작물) 또는 50%(가축) · 지자체에서 30~40% 지원 · 농가 보험료 부담은 농작물 12.6%, 가축 38.8%
지원 대상	· 재해 피해 농가(품목 제한 X) · 농업 외 근로소득 50% 이상은 복구비 지원 제외 ·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대파대·입식비 지원 제외(생계비, 농약대는 지원)	· 보험 가입 농가(대상 품목 및 축종: 농작물 76종, 가축 16종, '25) * 가입 지역, 품종 등 일부 제한
농가 보상 (농작물)	· (금액) 지원단가×피해면적 · (시기) 통상 피해 발생 후 1~2개월 내 · (절차) 피해 조사(지자체) → 복구비 확정(중앙) → 복구비 지급(중앙→지자체→농가)	① 농작물 수확감소보장(43개 품목) · (금액) 피해액(수확량감소분×가격) - 자기부담금(보험가입금액×자기부담 비율) · (시기) 품목별 수확기이후 · (절차) 피해조사(손해평가인력) → 보험금 산정 및 지급(보험사) ② 농작물 생산비보장(33개 품목) · (금액) 피해면적 × 단위면적 당 생산비 × 경과비율 × 피해율 · (시기)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시마다 * 일부 품목 예외 · (절차) 피해조사(손해평가인력) → 보험금 산정 및 지급(보험사)

자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제출자료(2026.5.)

개정안의 농업재해공제는 가입자가 공제운영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개별적으로 공제계약을 맺고, 재해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범위 내에서 손해평가를 거쳐 공제금을 지급 받는 구조임.

이때, 국가는 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공제사업에서 지급해야 할 총 공제금이 공제가입자가 부담한 공제부담금 총액을 초과할 경우 그 결손을 재보험기금 적립금으로,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 재정으로 최종 보전함으로써 제도의 재정적 기반과 지속가능성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농업재해공제' 제도 운영방식]



자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제출자료(2026.5.)

개정안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재해보상체계인 '농업재해공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험 운영·미운영 품목 간 재해 대응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재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임.

[‘농업재해공제’ 제도 도입 효과]

시행 전 (As-Is)			시행 후 (To-Be)		
■ 농작물보험 미운영 품목 재배 농가에 대한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장 수단 부족			■ 농작물보험 미운영 품목 또한 재해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장 수단 확대		
경제적 손실 보상	농작물보험 (‘01~, 78개 품목)		경제적 손실 보상	농작물보 험	“농업 재해공제”
	농약대	대파대·농약대		농약대	대파대· 농약대
복구비용 지원	피해율 50% 이상 생계비		복구비용 지원	피해율 50% 이상 생계비	
	보험 품목	비보험 품목		보험 품목	비보험 품목

자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제출자료(2026.5.)

농식품부도 재해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농업재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안과 같은 공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비보험작물 재해지원(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제도⁷⁾를 운영하고 있음. 상업용으로 생산되며 작물보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농업작물 및 상품이 대상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 손실 등을 보험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음.

7) [참고 1] 참조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과 같은 공제제도의 도입은 국가의 우발채무 발생가능성을 높여 재정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의 농업재해공제는 가입자에게 받는 공제부담금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나 지급해야 하는 공제금이 부담금보다 큰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는 구조임. 즉 공제사업의 수지가 악화되는 경우 그 결손이 최종적으로는 국가재정으로 귀속되는 구조로서, 공제부담금이 적정 수준으로 산정되지 않거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음.

그런데 농업재해공제는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 품목에 대한 재해 발생 빈도·손해율·위험도 등에 관한 통계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적정 공제부담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손해율이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대규모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공제금 지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재해공제사업의 손실을 현행 재보험기금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보험과 재해공제사업의 차이 및 재보험기금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재보험기금은 국가가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거대재해 위험을 분산하고 재보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재보험자에게 이전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인 반면, 개정안에 따른 재해공제사업은 공제운영기관이 위험을 직접 인수하고 관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보험과는 법적·경제적 성격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공제사업의 손실을 재보험기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은 재보험기금의 설치 목적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공제사업은 보험 운영 실적과 통계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만큼 손해율의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손실까지 재보험기금이 부담하게 될 경우 기금 재원의 소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며, 향후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농업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보험 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있음.

셋째, 개정안 제30조는 재해공제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한 공제분쟁심의위원회를 공제운영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

토가 필요함.

우선 공제운영기관은 공제계약의 체결, 공제부담금 수납 및 공제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분쟁조정기구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분쟁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공제가입자의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제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제가입자의 권리보호와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설치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미국 '비보험작물 재해지원' (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 ☐ (사업목적) 비보험작물 대상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 손실 등을 보험방식으로 보장*('95~)

* 작물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나, 모든 품목에 동일한 보험요율(5.25%) 적용

* 연방작물보험개혁법(Federal Crop Insurance Reform Act, 1994) 근거, 농가지원청(FSA) 담당

- ☐ (대상품목) 상업용으로 생산되며 작물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농업 작물·상품

- ☐ (보장내용) 자연재해, 병충해, 산불 등으로 인한 수량 손실 보상

구분	기초보장	구매보장(buy-up)			
수량량 보장수준	50%	50%	55%	60%	65%
가격 보장수준	55%	100%			

- (보상한도) 기초보장상품 가입 시 최대 보상 금액은 125천 달러(약 1.7억원), 추가 보장상품 가입 시 최대 보상 금액은 300천 달러(약 4.2억원)

- ☐ (지원내용) 기초보장상품 가입 시 수수료만 납부(보험료의 100% 지원), 구매 보장상품 가입 시에는 수수료와 보험료 납부

- 수수료는 작물당 325달러(카운티당 최대 825달러, 생산자당 최대 1,950달러), 보험료는 보장금액과 보험요율(5.25%)로 산출(최대 15,750달러)

* 보장금액 = 농가 수확량(인정수량) x 시장가격(통상 주별 가격) x 보장수준

- ☐ (가입자격) 연평균소득 90만불(약 10억원) 이하 농가

* 작물 생산기록(최소 4년~최대 10년) 증명, 경작면적, 당해연도 생산량 보고 등 필요

* 신규농·영세농·재향군인농업인은 수수료 면제 및 보험료 50% 면제

- ☐ (가입실적) '15~'23년까지 누적 20만명 가입(87%가 기초보장상품 가입)

- 가입건수 기준 방목용 목초 및 사료작물이 48%, 채소류가 34% 차지('15)

(단위: 명)

구분	보장수준	프로그램 연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초보장	0.5	15,521	15,589	22,407	28,066	21,827	25,106	17,882	15,712	12,011	1,789	175,910
추가보장	0.5	94	49	47	46	27	40	25	29	33	9	400
	0.55	24	16	22	10	1	12	8	13	4	2	112
	0.6	36	27	29	31	45	98	191	337	195	34	1,023
	0.65	1,933	2,432	2,729	2,379	2,100	2,350	2,825	3,028	2,888	1,248	23,912
합계		17,608	18,113	25,234	30,532	24,001	27,606	20,931	19,119	15,131	3,082	201,357

3. 보상의 범위에 기상특보구역 포함(김용태 의원안)

김용태의원안(이하 개정안)은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된 구역에서 기상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상의 범위로 명시하고, 손해평가 시 기상현상 또는 병해충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품질저하 요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김용태의원안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 ----- ----- ----- ----- ----- <u>. 이 경우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가 발표된 구역에서 기상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도 이를 재해보험 보상의 범위에 포함한다.</u>
② (생 략)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은 품목별·재해</u>

현 행	김용태의원안
③ ~ ⑧ (생략)	<u>별·시기별로 조사하되, 기상현상 또는 병해충 발병 등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품질 저하 요인을 고려하여 영상분석과 광학기기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u> ④ ~ ⑨ (현행 제3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현행법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병충해를 재해로 지정하고 있음. 또한 손해평가사 등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기상특보가 발표된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보험목적물(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품질저하를 영상분석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손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농어업인의 피해보상을 보다 두텁게 하여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보험목적물의 손해평가시 자연재해와 농수산물 등의 품질저하의 인과관계를 고려하고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수산물의 품질은 작목의 종류, 생육단계, 재배방식 및 지역적 여건 등에 따라 동일한 기상현상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이후의 관리 수준 등에 따라서도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자연재해와 품질저하 간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고, 그 인정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둘째, 영상분석, 광학기기 등 객관적인 방법에 따른 손해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품질저하를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수산물의 품질은 품목별 특성 및 피해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더불어 동일한 평가기법을 적용하더라도 촬영환경, 측정조건 및 분석 방법 등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품질을 구성하는 요소 또한 품목별로 상이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영상분석, 광학기기 등을 활용한 평가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의 객관성까지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법상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⁸⁾로서 태풍·호우·강풍·대설·한파·폭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며, 이는 「기상법」상 특보 대상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이미 포괄하고 있음.

[「기상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상 기상현상]

구분	내용
「기상법」상 특보 대상 기상현상	호우, 대설, 태풍, 강풍, 황사, 건조, 한파, 폭염(열대야 포함), 풍랑, 폭풍해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현상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 지진, 황사 ,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따라서 개정안은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포함되는 사항을 확인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 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8)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된 기상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현행법에 이미 포함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낮으며, 농작물의 재해 피해는 재해 원인별로 구분하기 어렵고, 품질 저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품질 저하로 인한 손해 감소의 추정 금액 확인의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해수부도 개정안에 대하여 보험제도 손해평가와 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해 재해 개념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손해평가시 품질저하 요인 고려는 실제 다양한 원인과 복합적인 사유로 재해와의 명확한 인과관계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임.

4. 기후변화 대응 재해보험 보상범위 연구 기능 추가(김용태 의원안)

김용태의원안(이하 개정안)은 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범위에 재해 관련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김용태의원안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2.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3.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u><신 설></u>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 5.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② . ③ (생 략)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재해 관련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와

해수부에게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의 발생 양상, 빈도 및 피해 규모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재해 유형과 피해 기준을 전제로 한 재해보험 상품 연구만으로는 새로운 재해 위험을 적시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기후변화 자료의 분석과 재해 위험 예측을 토대로 재해보험의 보상범위 및 보장수준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능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해 환경을 재해보험상품에 보다 적시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법상 재해보험상품의 연구에는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보장수준 및 보상기준 등 보험상품의 설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재해보험의 특성상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재해보험의 보상범위 및 보장수준 등을 검토하는 것은 재해보험상품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무로 볼 수 있음.

또한, 기후변화 감시 및 재해 위험 예측은 기상청 등 관계 전문기관이 생산하는 자료와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별도의 법정 업무로 규정하더라도 현행 재해보험상품 연구 업무와 실질적인 차별성이 크지 않을 수 있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한편, 농식품부는 재해보험 보상범위의 연구·개발 사항은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에 포함되는 사항이며, 보험상품 연구·개발 시 재
해 관련 기후 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

5.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 업무 추가(서삼석의원안)

서삼석의원안(이하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정책보험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의 관리·감독, 보험 적용 가격의 공시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서삼석의원안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u>재해보험사업</u>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u><신설></u> 3.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u><신설></u>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u>정책보험사업</u>----- <u>2의2. 제11조제7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u>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14조에 따라 정책보험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에 관한 지도·점</u>

현 행	서삼석의원안
<u><신 설></u> 4. 그 밖에 <u>재해보험사업</u> 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 (생 략)	<u>검 · 감독</u> <u>3의3. 제25조의3에 따른 가격의 공시</u> <u>에 관한 업무</u> 4. ----- <u>정책보험사업</u> ----- ----- ----- ③ (현행과 같음)

농금원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⁹⁾된 공공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 사업의 관리·감독 및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재해 관련 통계생산 및 손해평가에 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손해평가는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절차로서 피해 규모와 보상액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농금원은 현재 농업정책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보험 관련 통계 생산 및 손해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손해평가 결과 검증조사 업무를 수행할 전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③ (생 략)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

3.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5.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문성과 업무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또한, 정책보험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농업정책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기능으로, 농금원이 수행 중인 보험사업 관리·감독 업무와 연계하여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임. 보험 적용가격의 공시는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산정의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농금원이 현재 기준가격을 공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해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업무로 판단됨.

개정안은 농업정책보험 규모 확대에 따라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농금원의 기존 업무와 전문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음.

농식품부는 농업정책보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손해평가 결과 검증조사, 판매업무 위탁기관(지역농축협) 지도·점검·감독, 보험 적용 가격의 공시 관련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응원에 위탁하는 규정으로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5